

2)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또는 건축부재(이하 주요 건축부재라 한다)는 한국공업규격 표시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공업규격표시제품에 없는 경우에는 국립건설시험소장에 인정하는 것
에야 한다.

2. 침구류의 방염 처리 유보 조치

가. 소방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중 침구류에 대하여는 "85.12월까지 방염 처리를 하도록 동 부칙 제2항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나. 방염의 경우, 방염 처리된 침구류를 사용하게 되면 원자는 피부염에 발생될 우려가 있다하므로,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방염 처리 기간을 1987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유보 조치함.

3. 옥외 소화전에 대한 기술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5조와 111호 규정 중 옥외 소화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술상의 규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표준 옥외 소화전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제357조 내지 제365조 및 제372조에서 규정된 옥외 소화전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이외의 옥외 소화전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검합부 및 내압력등) 표준 옥외 소화전 이외의 옥외 소화전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어 생산하게 되는 때에는 제조업자는 동 제품이 검정 규칙 제358조, 제361조 내지 제364조 및 제37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검정 신청 등) ① 옥외 소화전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정 규칙 제1장 및 제2장을 적용하며, 형식 검정 신청서에 제출할 전품의 수량, 형식 변경의 승인, 범위,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 개별 검정의 회계수검수량, 개별 검정의 합계 표시 및 검정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표준 옥외 소화전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검정 규칙 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할 검사항목이 필요로 하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령 :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안전점검 결과 통계 작성 지침 보완

① 안전 점검 결과 통계 작성 지침 : 협회협부의 전신화로 인해 안전 점검 결과 통계 작성 방법에 일부 보완되었다. 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성원칙

가. 월별, 용도별로 구분해서 작성한다.

나. 연면적 1000㎡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작성한다.